

[별표]

평가위원 유의사항(제5조제2항 관련)

▪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.
▪ 표정으로 찬성·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점수로 평가하여야 합니다.
▪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.
▪ 평가대상자에게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평가대상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편 가르기 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.
▪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.
▪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.
▪ 정성 필수 제안 사항 평가 시 업체 제안 내용이 제안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평가한다.

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

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
▪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
▪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
▪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할 경력이 있는 경우
▪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위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.